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신기술심사위원회와 본 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관리위원회”를 “신기술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모형 신기술”이라 함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발주청의 수요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모형 신기술은 제19조의2의 신기술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모형 신기술) 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 발주청에 공모형 신기술 수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모형 신기술의 수요가 있는 경우 기술 범위, 신청자격 등을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신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에게 공모형 신

기술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수요 제출이 있는 경우, 제19조의2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할 신기술의 범위, 신청자격 등 공모형 신기술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공모를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모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한 발주청은 진흥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공모에 신청 접수된 기술이 발주청이 요구한 신기술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장은 제6항에 따른 발주청의 검토결과 신청기술이 발주청의 신기술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기술이 공모형 신기술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고, 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의 진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공모에 신청한 기술 중 발주청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이나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진흥원장은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한 발주청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신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⑩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1조제4호의 서류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 이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리자”를 각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제9호의 공모형 신기술 수요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는 제4의3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각각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신기술 지정 정책에 관한 사항

2. 신기술 활용·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모형 신기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기술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신기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신기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기술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3.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신기술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의3(중전의 제19조의2)의 제목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제19조의2”를
각각 “제19조의3”으로 한다.